

아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아신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아신대학교 학칙 제1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제2조(설치대학원) 대학원에 아신대학교 일반대학원을 두고, 특수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구 복지대학원(2021학년도 신입생까지)]을 둔다. <개정 2021. 7. 20.>

제3조(과정) 본 대학원의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각 대학원별, 학위과정별 수여학위는 <별표 1> 대학원 수여학위와 같다.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은 <별표 2> 대학원 입학정원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대학원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으며,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제1항 규정 외에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한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4.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ACT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 AIGS)은 총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대학원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의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①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은 기독교 출석교인

이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별로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1.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자 : 다음 각 목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9. 8. 1.>

가. 학사학위, 목회학석사학위 또는 문학석사학위(신학 또는 선교학 전공), 신학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기독교복지학을 지원할 경우 학사학위 및 동일 전공의 문학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 : 다음 각 목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9. 8. 1.>

가. 학사학위 및 목회학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기독교교육학 및 기독교상담학 전공을 지원할 경우 학사학위 및 동일 전공의 문학석사학위 취득(예정)자

3. 일반대학원 신학석사, 선교대학원 선교학신학석사 과정 지원자 :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격을 갖춘 자

가. 학사학위와 목회학석사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학사학위와 신학, 선교학 전공 석사학위취득(예정)자

4. 일반대학원 문학석사,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및 문학석사, 선교대학원 선교학문학석사,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상담대학원 상담학석사,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문학석사 과정 지원자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개정 2021. 7. 20.> <개정 2022. 9. 23.>

5.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과정 지원자 : 학사학위와 목회학석사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제8조(지원절차 및 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법은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서류심사, 구술시험, 필답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과 방법은 해당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제24조 학·석사연계과정은 지원절차 및 입학전형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편입학) 당해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전형방법,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 학년도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 3 장 수업, 수업연한, 교육과정, 이수학점, 수료

제11조(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위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 2년(4학기), 석·박사통합 4년(8학기), 박사 3년(6학기)으로 한다.

② 신학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목회학석사는 3년(6학기), 신학석사는 2년 6개월(5학기), 문학석사는 2년(4학기)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선교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의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개정 2021. 7. 2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학위과정별로 제36조의 졸업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 6개월 이내 <개정 2020. 12. 1.>

제13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각 과정별 수업연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업방법) ①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3.>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23.>

제15조(수업일수 및 집중이수제)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천재지변, 비상재해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수업하되,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

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 없이 집중수업이 가능하다.

제16조(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할 수 있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토요일, 일요일과 국정공휴일

제17조(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각 대학원별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제17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로 정하되,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취득학점) ① 석사과정의 취득학점은 30학점(논문선택 시 논문학점포함)으로 한다. 단,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과정의 취득학점은 90학점으로 하며, 신학대학원 문학석사 과정은 36학점으로 하며,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다문화사회복지융합전공의 취득학점은 45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개정 2021. 12. 30.> <개정 2022. 9. 23.>

② 석·박사통합과정은 48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은 36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료) ① 석사과정은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단, 논문을 선택한 학생은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취득 후, 논문학기를 등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은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 취득 후, 논문학기를 등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③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21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물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등급과 평점은 (표1) 학업성적 등급표와 같다. 단,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및 문학석사 과정은 (표2)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학업성적 등급표와 같다. <개정 2022. 9. 23.>

(표1) 학업성적 등급표

등 급	점 수	평 점
A+	97 - 100	4.3
A0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B0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C0	74 - 76	2.0
F	0 - 73	0
P	합 격	불계
NP	불합격	불계

(표2)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학업성적 등급표

등 급	점 수	평 점
A+	97 - 100	4.3
A0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B0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C0	74 - 76	2.0
C-	70 - 73	1.7
D+	67 - 69	1.3
D0	60 - 66	1.0
F	0 - 59	0
P	합 격	불계
NP	불합격	불계

② 학점은 C0등급(평점 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및 문학석사 과정은 D0등급(평점 1.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2. 9. 23.>

③ 수료를 인정하는 성적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B0등급(평점3.0)이상 이어야 한다. 단, 목회학석사 및 문학석사 과정은 전체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C0등급(평점 2.0) 이상인 경우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22조(학점교류)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학점교류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학점 이내(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과목의 경우도 동일 과목으로 인정 될 경우 학점인정 가능) 단, 본교 신학부를 졸업한 자는 졸업에 필

요한 학점의 18학점 이내 <개정 2022. 9. 23.>

2. 학·석사연계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이내(학·석사연계과정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과목에 한하여 학점 인정)
 3. 석·박사통합과정 : 본교 대학원 신학석사(Th.M.) 동일전공의 이수학점 중 9학점 이내
 4. 편입생 : 졸업에 필요한 학점(논문을 제외한 교과목)의 2분의 1 이내 <개정 2021. 4. 23.>
 5. 목회학석사 과정의 목회트랙 또는 전문사역트랙에서 트랙(전공)별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트랙(전공)과 연계되는 다른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학점 이내 <신설 2022. 9. 23.>
- ② 본 대학원에 재학 중 학점인정이 가능한 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제22조 규정에 따라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점인정은 학점만 인정되고 성적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④ 학점인정을 받더라도 제12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은 충족하여야 한다.
 - ⑤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학점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3.>

제24조(학·석사연계과정)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상호연계를 통한 전공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석사연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 및 전공은 해당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 장 등 록 및 학 적

제25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및 문학석사 과정은 매년, 타 대학원 및 전공은 매학기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를 위한 군복무 기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임신/출산, 자녀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자녀육아의 경우 자녀가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정특례질환과 임신/출산, 자녀육아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각각 최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 4. 23.> <개정 2022. 9. 23.>

③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임신, 출산, 입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3.>

제27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8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 입학 후 전과 및 전공변경은 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전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2.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
3.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한 자
4.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5. 학력을 위조한 자
6. 성품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수업을 방해하는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주요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회에 출석하거나 이단교리를 신봉하는 자

제31조(과정전환)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과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학기 시작 전 소정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6조제2항의 졸업자격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5 장 자격시험

제32조(외국어시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 신학석사과정 중 이론신학(신약, 구약, 조직, 역사) 전공자
 2.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체
- ② 외국어시험 과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예비시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선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영어교육선교학(TESOL) 전공자는 어학성적으로 예비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졸업요건으로 과목을 선택한 자(상담전공은 상담사례발표를 선택한 자 제외)로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20. 5. 6.>

② 예비시험 과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종합시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을 6학기 이상 이수하고,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종합시험 과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중간심사) ①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박사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중간심사는 2학기(12학점)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평점, 외국어시험, 담당교수평가 등을 반영한다. <개정 2019. 8. 1.>

③ 중간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제36조제2항의 졸업자격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④ 중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구두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제36조(졸업자격) ①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제19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

3. 성적의 평점평균이 B0등급(평점 3.0) 이상인 자

4.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5.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한 자

6. 소정의 임상 요건 및 학술지 연구논문 투고 실적을 충족한 자(기독교상담학 및 목회상담학 전공)

②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제19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

3. 성적의 평점평균이 B0등급(평점 3.0) 이상인 자

4. 졸업(예비)시험을 통과한 자

③ 신학대학원의 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제19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

3. 성적의 평점평균이 목회학석사 및 문학석사는 C0등급(평점 2.0) 이상, 신학석사는 B0등급(평점 3.0) 이상인 자 <개정 2022. 9. 23.>

4. 성경시험점수를 통과한 자(목회학석사)

5. 경건생활점수를 통과한 자(목회학석사)
6. 강해원고심사를 통과한 자(성경강해학 전공) <개정 2019. 8. 1.>
7.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 <신설 2022. 9. 23.>
- ④ 선교대학원의 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제19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
 3. 성적의 평점평균이 B0등급(평점 3.0) 이상인 자
 4. 예비시험을 통과한 자
 5. 미디어선교학 전공자로 프로젝트를 통과한 자 <신설 2022. 2. 22.>
- ⑤ 교육대학원의 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제19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
 3. 성적의 평점평균이 B0등급(평점 3.0) 이상인 자
 4.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20. 5. 6.>
 - 가. 논문을 통과한 자
 - 나. 상담 전공은 상담사례발표를 통과한 자
 - 다. 교육과정 및 다문화교육 전공은 프로젝트를 통과한 자
 - 라. 논문을 대체하여 1개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자
 5. <삭제 2020. 5. 6.>
 6. <삭제 2019. 8. 1.>
- ⑥ 상담대학원의 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제19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
 3. 성적의 평점평균이 B0등급(평점 3.0) 이상인 자
 4. 상담사례발표에 통과한 자
 5. 인턴수료증을 2회(2학기분) 제출한 자 <신설 2019. 8. 1.>
- ⑦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의 졸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제19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
 3. 성적의 평점평균이 B0등급(평점 3.0) 이상인 자
 4.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면제한다.)
 5. 복지실습을 이수한 자(사회복지전공 및 다문화사회복지융합전공, 단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선택으로 한다.)

제 6 장 논문 및 학위 수여

제3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박사학위과정 6학기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
단,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정규 등록 학기수와 관계 없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3. 학점 성적의 평점평균이 B0 이상인 자
4.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위논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38조(학위논문)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논문제출기한) 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과정 수료 후 2년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는 4년 이내로 한다.

제40조(논문심사) 석사학위, 석·박사통합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각 위원의 합산한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41조(학위수여) ① 각 대학원별로 제36조의 졸업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해당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은 <별지서식 1호> 또는 <별지서식 4호>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③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별지서식 2호>, 박사학위과정은 <별지서식 3호>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42조(조기졸업) ① 제36조 졸업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제12조제4항의 수업연한 단축기간 범위 내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이 가능한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졸업연기) ①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규 졸업이 가능한 학기의 수업 종료일 전까지 졸업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연기 기간은 학기별로 가능하며,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다.

③ 졸업연기 신청자는 매 학기 1과목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졸업연기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제44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제 7 장 명예박사학위 및 명예석사학위

제45조(자격)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명예박사학위 또는 명예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별지서식 6호>에 의한 학위증서를 명예석사학위의 수여는 <별지서식 7호>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또는 명예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8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연구생

제48조(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① 대학원에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 또는 연구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9조(연구생) ① 대학원은 석사과정 및 석·박사과정의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연구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7조에 규정한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② 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별지서식 5호>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전형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상벌 및 학생활동

제50조(장학금) 장학금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51조(포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 처분을 한다.

제53조(원우회)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대학원별로 원우회를 둘 수 있다.

제 10 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54조(직제)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 선교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20.>

③ 대학원위원회 및 신학대학원위원회는 각각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대학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졸업, 제적,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과나 전공의 설치와 폐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제규칙, 예규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6조(준용규정) 기타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신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학칙, 신학대학원 학칙, 선교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상담대학원 학칙, 복지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② 신학대학원 성경강해설교학에서 성경강해학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성경강해학으로 전공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공

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대학원 가정상담에서 가족상담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단, 이전에 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가족상담으로 전공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공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8조제4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의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은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선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6조 제5항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전공자의 졸업자격은 2020년 2월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1] 선교대학원 아랍선교학에서 아랍지역학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전공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명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6조제4항제5호 삭제에 따라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부터는 선교실습 또는 선교리서치 이수여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복지대학원에서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으로의 대학원명 변경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1학년도 이전 복지대학원으로 입학한 자는 기존의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

한다.

② 복지대학원 제적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으로 재입학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 제적자는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다문화교육으로 편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학위기(논문 제출자) <개정 2019. 8. 1.>

<개정 2021. 7. 20.>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한 결과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논문제목 :

년 월 일

아신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총장(학위) ○○○ (인)

학위등록번호 : 아신대 ○○○○ (석) ○○

<별지서식 2호>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학위기(논문 미제출자) <개정 2019. 8. 1.>
<개정 2021. 7. 20.>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총장(학위) ○○○ (인)

학위등록번호 : 아신대 ○○○○ (석) ○○

<별지서식 3호>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기 <개정 2019. 8. 1.> <개정 2021. 7. 20.>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한 결과 철학박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논문제목 :

년 월 일

아신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총장(학위) ○○○ (인)

학위등록번호 : 아신대 ○○○○ (박) ○○

<별지서식 4호>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학위기 <개정 2019. 8. 1.> <개정 2021. 7. 20.>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한 결과 철학박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논문제목 :

년 월 일

아신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총장(학위) ○○○ (인)

학위등록번호 : 아신대 ○○○○ (박) ○○

연구 실적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였기에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인)

<별지서식 6호> <개정 2021. 7. 20.>

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함으로서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총장(학위) ○○○ (인)

학위등록번호 :

<별지서식 7호> <개정 2021. 7. 20.>

명석 제 호

학 위 기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함으로서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대학원장(학위) ○○○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석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아신대학교 총장(학위) ○○○ (인)

학위등록번호 :

[별표 1] <개정 2019.8.1.> <개정 2019.10.7.> <개정 2021.4.23.> <개정 2021.7.20.> <개정 2022.9.23.>

대학원 수여학위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	전공		수여학위	학위구분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신학과	이론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철학박사	학술학위
			실천신학I	선교학,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예배설교학		
			실천신학II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기독교복지학		
	석·박사 통합학위	신학과	이론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신학석사 및 철학박사	학술학위
			실천신학I	선교학,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예배설교학		
			실천신학II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석사학위	신학과	Th.M.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학,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예배설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신학석사	학술학위
			M.A.	신학, 영성신학	문학석사	
		기독교교육학과	M.A.	기독교교육학	문학석사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신 학 과	목회학		목회학석사	전문학위
	석사학위	신 학 과	성경강해학		신학석사	전문학위
	석사학위	신 학 과	신학		문학석사	전문학위
선교대학원	석사학위	선교학과	일반선교학, 북한선교학, 아랍지역학 중국선교학, 미디어선교학, 스포츠선교학 비즈니스선교학		선교학신학석사 선교학문학석사	전문학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학석사	전문학위
		상담	상담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기독교상담	기독교상담		상담학석사	전문학위
		가족상담	가족상담			
복지대학원 (2021학번까지)	석사학위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전문학위
다문화교육 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다문화사회복지융합	다문화사회복지융합		문학석사	전문학위
		사회복지	사회복지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별표 2] <개정 2021. 7. 20.> <개정 2022. 9. 23.>

대학원 입학정원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1994	1995 ~ 1997	1998 ~ 1999	2000	2001	2002	2003 ~ 2011	2012	2013 ~ 2014	2015 ~ 2016	2017 ~ 2019	2020 ~ 2021	2022	2023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9	9	9	9	20	7	7	7	7	10	8	8	8	8	8	8	8	25			
	석·박사 통합과정														10	10	10	10	10	10	10	10			
	석사과정		30	30	30	40	52	62		75	75	75	75	80	52	52	47	42	42	42	42	28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과정														30	30	25	25	25	25	15				
	목회학 석사과정	20	20	30	30	30	30	30	60	24	40	60	70	80	80	90	90	90	90	90	90	70			
	문학 석사과정																					15			
선교대학원	석사과정									36	36	50	50	30	20	30	30	35	40	40	40	40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60	60	60	60	60	40	40	35	30	25	25
상담대학원	석사과정														40	42	42	42	45	45	45	45	45	40	40
다문화교육 복지대학원	석사과정														20	20	20	20	17	17	17	17	17	17	17
총 입학정원		20	50	60	69	79	91	101	80	142	218	252	322	322	322	322	312	307	307	302	285				